##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239

발의연월일: 2021. 6. 30.

발 의 자:김경협·강준현·기동민

김민기 · 김병기 · 김홍걸

노웅래 · 임호선 · 조승래

홍기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 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은 문리적 해석상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정보활동기

본지침 개정 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법률 제 호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조(직무) ① (생 략) 제4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 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 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 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 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도 또한 같다.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 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 <u>구할 수 있으며, 원장</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한다. <신 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 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 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